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과정

-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 서구청장
- 제출일자 : 2020. 6. 3.
- 회부일자 : 2020. 6. 3.
- 상정 및 의결 :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 
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0.6.14.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송준호 건설안전과장)

### 가. 근거법령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, 제76조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조, 제73조

### 나. 폐지이유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규정된 재해영향평가 관련 위임사무에 대한 관련법  
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### 다. 주요내용

-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성완)

- 본 폐지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규정된 재해영향평가 관련 위임사무에 대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,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